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보건안보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등급 1명, 5·6등급 1명),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6등급 1명), 공관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재외공관에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4등급 1명) 및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6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에 각종 소·다자경제협약의체 대응, 공급망 관련 협력 등 경제안보 외교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력 3명(5·6등급 3명)을 증원하고 양자경제외교국의 일부 분장사무를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으로 조정하고, 국제기술규범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관련 교섭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등급 1명)하여 배정하고, 민주주의 국제협력 총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6등급 1명)을 증원하고, 영토해양 관련 홍보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고, 재외공관 경제분야 인력 1명(5·6등급 1명), 산업통상자원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기타 재외공관 필요인력(5·6등급 10명)을 증원하고, 기타 외교부 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국과 동북아

국 간 분장사무조정,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9명(5·6등급 4명, 3·4등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재외공관 등 소속기관 정원 9명(5·6등급 3명, 3·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4.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양자 제재에 관한 외교업무의 총괄·조정

13. 양자 수출통제에 관한 외교업무의 총괄·조정

제18조의3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
· 조정

제31조제3항제2호 중 “나우루·네팔·뉴질랜드·동티모르·라오스·마셜제도·마이크로네시아·말레이시아·몰디브·몽골·미얀마·미합중국·바누아투·방글라데시·베트남·부탄·브루나이·사모아·솔로몬제도·싱가포르·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쿡제도·키리바시·태국·튀르키예·통가·투발루·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팔라우·피지·필리핀·호주,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국가·유럽연합”을 “몽골·미합중국·영국·일본·중국·캐나다·튀르키예·유럽연합”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68명”을 “69명”으로 한다.

부 칙

별표 2 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란, 산업통상자원란 및 출입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계	342	70	272	33	17	190	32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15		15	2		13	
산업통상자원	54		54	4	2	41	7
출입국	31		31			13	18

별표 3 중 총계 “971”을 “972”로 하고, 4급 이하 “240”을 “238”로 하며, 전문경력관 “1”을 “3”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22”를 “723”으로 하며, 8등급 이하 “665”를 “66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9”를 “108”로 하고, 일반직 계 “44”를 “43”으로 하며, 4급 이하 “36”을 “3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442”를 “1,449”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442”를 “1,449”로 하며, 8등급 이하 “1,052”를 “1,059”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후환경과학외교국	0명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9명(5·6등급 4명, 3·4등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재외공관 등 소속기관 정원 9명(5·6등급 3명, 3·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① (생략) ②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생략) <u><신설></u>	제18조의2(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양자 제재에 관한 외교업무의 총괄·조정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3. 양자 수출통제에 관한 외교업무의 총괄·조정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양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양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9조(동북아시아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제19조(동북아시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illegible]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8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69명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71	972	+1
·	·	·	
·	·	·	
4급 이하	240	238	-2
전문경력관	1	3	+2
외무공무원 계	722	723	+1
·	·	·	
·	·	·	
8등급 이하	665	666	+1

[별표 4]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9</u>	<u>108</u>	-1
·	·	·	
·	·	·	
일반직 계	<u>44</u>	<u>43</u>	-1
4급 이하	<u>36</u>	<u>35</u>	-1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42</u>	<u>1,449</u>	+7
외무공무원 계	<u>1,442</u>	<u>1,449</u>	+7
·	·	·	
·	·	·	
8등급 이하	<u>1,052</u>	<u>1,059</u>	+7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7